자산운용의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기준

제 정 2009. 11. 25 개 정 2010. 03. 11 개 정 2011. 08. 10 개 정 2011. 11. 23 개 정 2013. 05. 31 개 정 2014. 07. 07 개 정 2014. 12. 23 개 정 2015. 12. 29 개 정 2016. 07. 27 개 정 2016. 10. 11 개 정 2018. 11. 27 개 정 2019. 12. 26

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(이하 "농금원"이라 한다)에서 위탁관리·운용하는 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의 위험관리 및 성과 평가에 관한 기본원칙과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자산운용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2장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

- 제3조(설치)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(이하 "평가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- 제4조(구성)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·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며, 본 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이 평가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 이 밖에 보험기획부 실무담당자가 간사로서 평가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.
 - 1. 보험기획부장, 검사역

- 2. 위험관리, 성과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원장이 선임한 외부전문가
-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산운용담당부서에서는 평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③위원회는 위험관리 분과와 성과평가 분과로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5조(임무)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자산운용의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
- 2. 자산운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3. 기타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중요 사항
- 제6조(위촉위원의 임기 및 운영 등)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- ②위험관리·성과평가관리부서 실무담당자는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고, 다음 사항을 기재 한다.
 - 1. 소집일시
 - 2. 출석위원 및 기타 관련자의 성명
 - 3. 심의안건 및 출석자의 의견
 - 4. 심의내용, 표결 등의 의결결과
 - ③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.
 - ④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않는다.
 - ⑤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 - 1.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연 2회 이상 대면심의(화상회의 포함)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.
 - 2. 평가위원회는 개최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·성과평가관리부서 실무담 당자는 위원장에게 개최 안건을 보고하고,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건의 주요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.

- 3. 평가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- 4.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7조(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의 준수의무)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1. 평가위원회 각 위원은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.
 - 2. 평가위원회 각 위원은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가 농어업재해재보험기 금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3. 평가위원회 각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.
 - 4. 평가위원회 각 위원은 투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·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 - 5.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리기관이 발주하는 법률자문, 소송대리, 연구과제 등을 수행 할 수 없다.
 - 6.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은 1호 내지 5호의 의무와 관련하여 <별지 5>의 서약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7.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평가위원회의 각 위원이 준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3장 위험관리 기준

- 제8조(용어의 정의) ①"위험"이라 함은 기금의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가능성 등 각종 불확실성을 말한다.
 - ②"위험관리"라 함은 리스크의 발생원인과 규모를 파악, 분석하고 적정 성여부를 평가하여 위험의 회피, 부담 또는 경감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, 다음 각 호를 위험관리대상으로 한다.

- 1. "유동성위험"이라 함은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말한다.
- 2. "신용위험"이라 함은 거래 금융기관 또는 채권 발행기관의 부도로 인한 손실위험과 더불어 신용등급의 하락에 따른 손실위험을 말한다.
- 3. "시장위험"이라 함은 금리, 주가, 환율 등의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.
- 4. "운영위험"이라 함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적절한 내부통제, 전산시스템 오류,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입게 될 비재무적 위험을 말한다.
- ③"VaR(Value at Risk)"라 함은 주어진 신뢰수준에서 일정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금액을 말한다.
- ④"Shortfall Risk"라 함은 전체 포트폴리오(Total Portfolio) 또는 개별 포트 폴리오의 누적투자 수익률이 일정수익률(0% 또는 물가상승률 등)을 초 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한다.

제9조(위험관리의 기본원칙) ①위험과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.

- ②사전적 관리에 의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을 적절히 분산하여 자산 운용의 안정성을 유지한다.
- ③평가위원회 담당부서는 자산운용 담당부서와 업무분리에 의한 상호견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험관리방법) ①유동성위험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금의 수입·지출규모 등을 예측하여 국가재보험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.
- 2. 예측하지 못한 자금수요에 대비하여 수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금성자산의 적정 비율을 유지한다.
- ②신용위험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거래대상 금융기관 선정시 재무안정성, 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분산

투자를 원칙으로 한다.

- 2. 연간자산운용계획 수립 시 안전성제고를 위하여 유가증권(채권, CP, 주식 등)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- ③시장위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한다.
 - 2. 신뢰수준 95%의 연간 VaR를 산출하여 관리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- ④운영위험 관리를 위하여 평가위원회 담당부서는 자체 감사자를 지정하여 연 1회 이상 규정준수 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다.
- ⑤유형별 위험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<별지 1>의 위기상황매뉴얼을 적용하여 사전적·체계적으로 대응한다. 또한, 금융시장의 급변 등 필요시위기상황분석(Stress-Test)을 실시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험측정기준) ①위험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측정·평가되어야 한다.
 - ②위험 측정방법은 정기적으로 Feedback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위험관리 보고체계) ①평가위원회 담당부서는 연간 허용위험한도를 설정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, 준수여부 등 운용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평가위원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자산운용 담당부서에 전달한다.

제4장 성과평가 기준

- 제13조(성과평가의 기본원칙) ①성과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.
 - 1. 적절성(Appropriateness) : 기금의 자산운용전략에 부합되는 성과평가

-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.
- 2. 표준화(Standardization) : 일반적이고 보편화한 방법으로 성과평가 되어야 한다.
- 3. 지속성(Consistency) : 성과평가 방법과 자료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.
- ②성과평가 방법 등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제14조(수익률의 적용) ①시간가중수익률 또는 평잔수익률을 사용하여 평가한다.
 - ②기준수익률은 <별지 2>에서 정한 수익률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, 성과평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운용상품과 유사한 다른 대체 투자 상품의 운용수익률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.
 - ③중장기자산은 위험을 고려한 위험조정수익률(Sharpe Ratio)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.
- 제15조(성과평가) ①투자의사결정 과정별 성과분석을 위하여 자산운용에 따른 수익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한다.
 - 1. 전략적 자산배분수익률은 연간 자산운용계획 등에 정해진 각 자산별 구성비율과 해당자산의 기준수익률을 가중 결합하여 산출한다.
 - 2. 전술적 자산배분수익률은 각 자산별 실제투자비율과 해당자산의 기준 수익률을 가중 결합하여 산출한다.
 - 3. 자산운용수익률은 각 자산별 실제투자비율과 해당자산의 운용수익률을 가중 결합하여 산출한다.
 - ②제1항에서 산출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투자 의사결정 과정별 성과를 평가한다.
 - 1. 전략적 자산배분의 성과는 전략적 자산배분수익률과 목표수익률을 비교하여 평가한다.
 - 2. 전술적 자산배분의 성과는 전술적 자산배분수익률과 전략적 자산배분수익률을 비교하여 평가한다.

- 3. 종목선택 성과는 자산운용수익률과 전술적 자산배분수익률을 비교하여 평가한다.
- ③성과평가는 자산운용체계와 리스크관리의 개선 등 정성적인 평가를 포함하며 그 방법은 <별지 3>에 따른다.
- 제16조(성과평가 결과의 반영) ①평가위원회 담당부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자산운용 담당부서에 전달한다.
 - ②성과부진 요인이 자산운용 과정의 중요한 업무착오, 과실 등에 의한 경우 자산운용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
- 제17조(인센티브 지급기준 등) ①지급기준은 <별지 4>에 따른다.
 - ②지급대상은 성과평가 해당연도 기준으로 <별지 4>의 각 부문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,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.
 - ③지급시기는 성과평가 결과 후 익월 이내에 지급한다.

부칙(2018.11.27.)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8년 11년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 제3항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위기상황매뉴얼

-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-

농업정책보험금융원

I. 위험관리방안 개요

□ 위험관리의 목적

○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자산운용 관련규정에 명시된 유형별 위험의 구체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, 주기적으로 위험관리를 실시함으로써 기금자산의 건전한 운용 및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

□ 근거규정

-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자산운용지침(8. 위험관리)
- 위험관리·성과평가기준(제2장제6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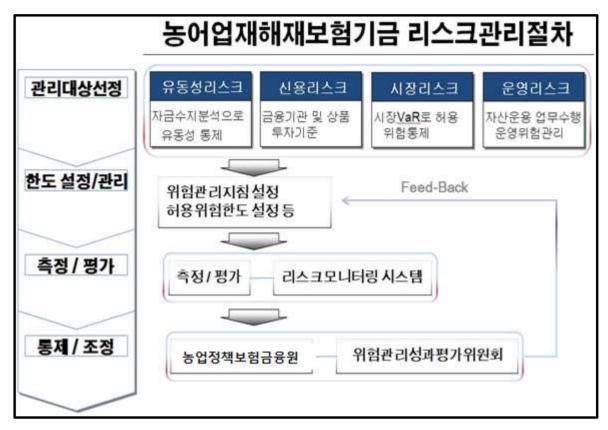
□ 설정내용

- ㅇ 허용위험한도 등 위험관리 목표 설정
- 위험관리 기준, 관리방법, 측정주기 등 세부지침 마련
- 자산운용 관련 내부감사 및 기준 설정 등

□ 유형별 리스크 관리기준

유 형	관리방법	점검주기	보 고
유동성위험	월별 자금수지분석	매월	
신용위험	금융기관 평가기준, 투자가능 금융상품 신용등급, 연간 Credit VaR	매월	위험관리 · 성과평가위원회에
시장위험	연간 Market VaR	매월	반기별로 보고
운영위험	정기감사 및 제규정 준수여부 확인	매분기	

□ 리스크관리 절차



II. 유동성 위험 관리방안

<정의> 예상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재보험금의 지급이 불가하게 되거나, 자산운용과정에서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하거나 거래 자체가 성립되지 못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

□ 관리기준

○ 관리방법

- 월별 수입·지출 계획점검을 통해 향후 현금 과부족 규모를 추정
- 상시 자금수지 분석과 만기분산 등을 통해 적정 유동성을 유지 및 관리
- 단기자금 허용위험한도 및 자산배분상 목표비율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, 유동성 관리에 필요한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함

○ 관리주기

• 매월 : 매월의 현금 과부족 규모 및 예비자금 규모를 추정하여 유동성 위험 발생 가능성 검토

□ 유동성위험 관리현황

(단위:백만원)

계획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수입(A)												
 지출(B)												
수지차 (A-B)												
예비자금규모												

[※] 월별 예비자금 규모는 만기도래자금 및 투자예상금액을 포함

□ 유동성리스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

구분	정상단계	주의단계	위험단계
판단지표	 실제 분기별 운용자금 규모가 유동성자금 계획 범위 50% 초과 운용기관의 변동성 변화가 정상상황일 때 	 실제 분기별 운용자금 규모가 유동성자금 계획 범위 50%~30% 운용기관의 신용등급 변화요인 발생시 	 예기치못한 자금수요 발생으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운용기관의 신용등급 하락 발생시
대응 조치	-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반기현황보고	 신규투자금지(MMF 등 현금성자산 제외) 분기내 유동성자금계획의 50% 이상 도달가능 여부 판단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보고 및 대응방안마련 	- 신규투자금지 - 전체 운용자산 매각으로도 충당이 불가한 수준의 유동성 필요시 비상조달계획 시행으로 자금조달 - 운용상품의 부분(전부) 매도 또는 환매 조치 -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보고

III. 신용위험 관리방안

<정의> 자금의 운용과 관련된 예치금융기관, 채권발행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해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될 위험

가. 금융기관 평가

□ 관리기준

- ㅇ 관리방법
 - 거래금융기관
 - 제1금융권 : 운용대상은행 평가결과에 따라 A, B, C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차등 자금 배정
 - 제2금융권 : 평가대상기관 중에서 평가결과 전체 순위에서 하위 일정 비율을 제외하여 풀을 구성 후 자금 배정
 - 채권 : 회사채 A이상, 기업어음 A2이상으로 신용등급 제한
- 관리주기 : 월별(최근 감독기관 고시자료활용)
 - * 연기금투자풀에 투자한 주식 및 채권은 연기금투자풀 규정 적용

□ 제1금융권 평가결과

			D-10-1		<u> </u>	11 A		
순위	회사명	총자산	BIS자기	고정이하	* 종자산		총점	병가
正刊	9/1/0	규모순위	자본비율	여신비율	이익율	등급	0 1	평가 등급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4								
5								
6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11								
13								
14								

□ 제2금융권 평가결과

- 증권사

순위	회사명	영업용 순자본비율	순유동 자산비율	자기자본 이익률	자산규모	총점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9						
10						
11						
13						
14						

- 자산운용사

순위	회사명	자기자본 비율	유동비율	투자신탁 설정액	기금운 용 수익률	총점
1						
2						
3						
4						
5						
6						
9						
10						
11						
13						
14						

□ 신용리스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

구분	정상단계	주의단계	위험단계
	- 예치대상 금융기관	- 예치대상 금융기관의	- 예치대상 금융기관의
	신용등급 현수준 유지	신용등급 1단계 하락	신용등급 2단계 이상 하락
	- 보유채권 및 기업어음의	- 보유채권 및 기업어음의	- 보유채권 및 기업어음의
판단	신용등급이 현수준 유지	신용등급이 투자가능	신용등급이 투자가능등급
지표		등급의 최하등급 또는	아래로 하락
		1등급 이상 하락	- 예치대상 금융기관의
			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
			중요사항 발생
	- 채권 및 기업어음	- 해당 금융기관 또는	-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
-1) O	신용등급 및 신용상태	채권의 신규투자 금지	보고 및 대응방안 결정
대응	수시 점검		- 필요시 회수조치 후
조치	-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		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
	반기현황 보고		보고

나. Credit VaR 관리

□ 관리기준

- 관리방법 : 기금 운용자산의 자금(단기 및 중장기)별 연간 Credit VaR 한도를 95% 신뢰수준하에서 설정 및 관리
- 관리주기 : 월별(반기별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에 정기 보고)
- 기타사항 : 1) Credit VaR 한도 소진율 초과시 위험관리·성과평가 위원회에 수시 보고
 - 2) Credit VaR 측정방법 및 허용위험한도 변경 필요시,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 심의 후 변경 가능

< Credit VaR 허용위험한도 설정>

- 예치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한을 A등급으로 하여 최대 위탁 가능액에 대한 예상외손실위험(Unexpected Loss) %VaR를 Credit VaR 허용한도로 설정
 - * 예상외 손실위험(Unexpected Loss) = 1.96 x (√(a x (1-a)) x b x c x √ 12) (a : 신용등급별 월간부도확률, b : 부도시 손실율, c : 예치금액)

□ 허용위험한도 설정

(단위 : %)

구 분	연간 허용한도	비고
단 기(1년 미만)	%	
중장기(1년 이상)	%	

□ 연간 허용한도 대비 VaR소진율 추이

(단위: %)

	VaR	′00년	0월	′00년	. 0월	'00년	0월	'00년	0월
구분	VaR 한도	VaR%	소진 비율	VaR%	소진 비율	VaR%	소진 비율	VaR%	소진 비율
단 기									
중장기									

□ Credit VaR 관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

구분	정상단계	주의단계	위험단계
	- Credit VaR한도 소진율	- Credit VaR한도소진율	- Credit VaR한도소진율
판단	80%이하	80%~100%	100%초과
지표			
대응	-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반기현황보고	- 시장상황 및 한도소진 원인파악 후 대응방안 마련하여 보고 - 예치기관의 채무 불이행 등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	 초과사유 및 향후 계획을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 에 보고후 조치 예치기관의 채무 불이행 등 가능성에 대한 2차
조치		의견 수렴 -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 부분(전부) 매도 또는 환매에 대한 가능성 1차 검토	전문가 의견수렴 -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 경우 부분(전부) 매도 또는 환매에 대한 가능성 검토

IV. 시장위험 관리방안

- <정의> 금리, 환율, 주가, 유가증권 등 시장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유한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
- ※ VaR(Value at Risk) : 주어진 신뢰수준(95%)에서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율(금액)

□ 관리기준

- 관리방법 : 기금 운용자산의 자금(단기 및 중장기)별 연간 또는 월간 Market VaR 한도를 95% 신뢰수준하에서 설정 및 관리
- 관리주기 : 월별(반기별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에 정기 보고)
- 기타사항 : 1) %VaR를 우선 적용하여 관리하며 VaR 한도 소진율 초과시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에 수시 보고
 - 2) VaR 측정방법 및 허용위험한도 변경 필요시, 위험관리· 성과평가위원회 심의 후 변경 가능

< Market VaR 산출방법>

- 일간수익률 = [(금일기준가 전일기준가) / 전일기준가] × 100
- 일간변동성 = $\sqrt{\sum (\overline{y})^2 (\overline{y})^2 (\overline{y})^2}$ 일간평균수익률) $^2/(n)$
- 월간VaR = 익스포져 × 일간변동성(표준편차) × 1.65 × √운용일수
- 연간 $VaR = 월간VaR \times \sqrt{12}$
- 포트폴리오 $VaR = \sqrt{\sum_{i} \sum_{j} (VaRi \times VaRj \times \rho ij)}$ ρ : 상관계수, i,j:자산유형

< VaR 허용위험한도 설정>

•최근 3년간 **벤치마크 수익률의 %**VaR값을 산출하고, 실적형 상품(주 식과 채권)의 비중이 최대 허용범위까지 확대된다고 가정시 유형 별 %VaR를 VaR허용한도로 설정함

□ 허용위험한도 설정

(단위: %)

구 분	연간 허용한도	비고
	%	
	%	

□ 연간허용한도 대비 VaR소진율 추이

(단위 : %)

Val	VaR	R '00년 0월		'00년 0월		'00년 0월		'00년 0월	
구분	VaR 한도	VaR%	소진 비율	VaR%	소진 비율	VaR%	소진 비율	VaR%	소진 비율
단 기									
중장기									

□ 시장리스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

구분	정상단계	주의단계	위험단계
	- VaR한도 소진율	- VaR한도소진율	- VaR한도소진율 100%초과
ԾԼ.⊢ Լ	80%이하	80%~100%	- 운용상품의 변동성이
판단지표		- 운용상품의 변동성이	벤치마크대비 30%초과시
		벤치마크대비 10~30%	
		초과시	
	-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	- 시장상황 및 한도소진	- 5영업일 이상 지속시
	반기현황보고	원인파악 후 대응방안	초과사유 및 향후 계획을
		마련하여 보고	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에
		- 운용상품의 변동성	보고후 조치
N A		확대여부 및 운용기관	- 운용상품의 변동성
대응		신용등급 하락가능성에	확대여부 및 운용기관
조치		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	신용등급하락 가능성에
		-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	대한 2차 전문가 의견수렴
		경우 부분(전부) 매도	-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인
		또는 환매에 대한	경우 부분(전부) 매도 또는
		가능성 1차 검토	환매에 대한 가능성 검토

V. 운영위험 관리방안

<정의> 자금운용과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적절한 내부통제제도, 전산시스템 오류,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 비재무적 요인으로 인하여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

□ 관리방법

- 여유자산 운용시 정부의 전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수입관, 지출관, 재무관의 내부통제절차로 관리
- ㅇ 실물자산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상유무를 확인
 - 내용 : 재고조사, 금융기관잔액증명서 등
 - 주기 : 정기(분기1회), 수시(필요시)

□ 실물자산내역 검토

상품유형		금융 기관	개설일	만기일	말잔액 (억원)	평가액 (억원)	잔액/평가액 일치여부
단기							
중장기							
합 	· 계						

□ 운영위험 체크리스트

구분	세부항목	여 부	특이 사항
	자금운용담당자의 자산운용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가?		
	보유채권의 신용등급은 적정한가?		
자금	운용대상자산의 범위 및 직무전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?		
· 1 운용 관리	간접투자자산 거래기관의 선정 및 해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?		
	유가증권의 만기관리는 적절하게 이행하고 있는가?		
	투자관련 의사결정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가?		
	기금운용관련 의사결정 기록물 및 결재자료의 보관 유지가 적절한가?		
자금 결제	자금결제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?		
외부일	위탁 자산운용사 선정은 적정한가?		
임/위탁	위탁운용자산에 대한 정기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?		
 실물	보유 중요증서는 안전한 금고에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가?		
관리	보관실물과 중요증서관리장부는 일치하고 있는가?		
., , ,	자금예치시 금리 입찰, 수수료 덤핑 등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가?		
불건전	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용한 투자업무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?		
행위 금지	투자정보의 제3자 누설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가?		
ш	자금운용자에게 보상 또는 이익이 돌아오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?		
	자금 운용 및 보관관리에 사용하는 인감은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는가?		
정보/	각종 계약서 원본을 안전한 장소에 절절하게 보관하고 있는가?		
보안 및 기타	경영진 및 각종 위원회에 정기보고를 실시하고 있는가?		
, ,	자산운용위원회 및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아있는가?		

□ 운영리스크 위기단계별 대응조치

구분	정상단계	주의단계	위험단계		
	- 월별, 분기별, 수시	- 월별, 분기별, 수시	- 월별, 분기별, 수시		
판단	감사결과 특이사항	감사결과 특이사항	감사결과 중대한 사항		
지표	미발생시	발생시	발생시		
	-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	- 원인파악 및 계통보고	- 위험관리성과평가위원회		
대응	반기현황 보고	- 관계자에 대한 주의통보	보고		
조치			- 관계자에 서면통보 및		
			징계여부 결정		

<별지 2> 성과평가 기준수익률

□ 기준수익률

- 자산운용의 성과를 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차기 자산운용에 반영 (Feedback)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
- ㅇ 기준수익률
 - 정의 : ∑(자산군별 기준수익률 * 자산군별 투자비중)
 - 자산군별 벤치마크지수

	구 분		벤치마크지수 ^{참고1)} 기준수익률				
현금	현금성(3개월미만)		-MMF 평균수익률				
유동성	확정	금리형	-3개월이상~6개월미만 : 정기예금 6개월미만 -6개월이상~12개월미만 : 정기예금 6개월~1년미만				
(3개월이상~ 1년미만)	단기실적 채권형		-국공채지수(3개월 이상~1년 미만)×국공채투자비율+회사채 지수(3개월 이상~1년 미만)×(1-국공채투자비율)				
	확정금리형		-1년이상~2년미만 : 정기예금1~2년미만 -2년이상~3년미만 : 정기예금2~3년미만				
7 -1 -1	국내채권 투자	간접투자 (채권형), 직접투자	-국공채지수(1년 이상~2년 미만)×국공채투자비율+회사채 지수(1년 이상~2년 미만)×(1-국공채투자비율)				
중장기 (1년이상)	혼합형펀드 (국내 채권·주식)		-국공채지수(1년~2년)×(1-주식투자비율) + KOSPI × 주식 투자비율				
	국내주식	간접투자 (주식형)	-KOSPI × 주식투자비율 + 콜금리지수(1-주식투자비율)				
	투자	직접투자	-KOSPI				

※ 정기예금금리는 한국은행 고시 평균금리, 채권형지수는 매경BP종합, KAP채권지수, KIS종합 채권지수 등 사용가능함

¹⁾ 기준수익률은 운용성과를 비교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지수의 사후실현수익률을 말함

<별지 3> 부문별 성과평가 기준

□ 자산운용 부문 (운용지원 포함)

1. 정량평가(50점)

○ 전체 자산운용의 초과수익률(40점) (=운용수익률 - 기준수익률)

[점수표]

초과수익률	0.40	0.35	0.30	0.25	0.20	0.15	0.15
(%p)	이상	이상	이상	이상	이상	이상	미만
점수	40점	36점	32점	28점	24점	20점	0점

○ 자산운용위원회 개최 실적(10점)

[점수표]

위원회 개최 실적(회)	5	4	3	2	1회 이하
점수	10점	7점	5점	3점	0점

2. 정성평가(50점)

- 현금성자금 최소화(보유수준 등)
- 자산운용 개선 노력 및 적정성
-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(Compliance) 준수의 충실성(거래기관 선정 기준 준수여부 등)
- 자산운용의 전문성 향상노력(직무교육, 자격증 취득 등)
- 월별 실적 산출의 적절성(정확도, 적시성 등)

□ 위험관리 부문 (성과평가 포함)

1. 정량평가(40점)

- 자산운용부문 계량평가 일부 반영(30점*)
 - 전체 자산운용의 초과수익률 (=운용수익률 기준수익률)
 - * 자산운용 지원 성격임을 감안하여 자산운용 부문 계량평가 일부인 자산운용 초과성과 화산 반영
- 위험관리·성과평가 위원회 개최 수(10점)

[점수표]

위원회 개최 실적(회)	6	5	4	3	2회 이하
구분	10점	7점	5점	3점	0점

* 분과위원회 50% 반영

2. 정성평가(60점)

-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(Compliance) 기능수행의 충실성(실적, 적시성 등)
- 성과평가의 적시성 및 객관성, 피드백의 적정성
 - 체계적인 성과평가 분석, 적시성, 체계 구축 등
- 위험관리의 적정성 및 개선 노력(리스크 측정모델의 적정성 등)
- 위험관리·성과평가의 관심 및 중요도, 업무수행 투입 비중
 - 평가 관련 참여 및 지원, 운용부서 만족도, 문서기안 수 등
- 위험관리부문의 전문성 향상(직무교육, 자격증 취득 등)

<별지 4> 인센티브지급기준

□ 1단계 : 부문별 배분기준

부 문	배분액(율)	1인당 배분금액	비고
자산운용부문(Front)	וו ב ב ב ווא וי ווי	예산액×배분율÷연인원수	
운용지원부문(Back)	예산액 기준 이내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 원회 심의 후 결정	예산액×배분율÷연인원수	
위험관리부문(Middle)	- 현의	예산액×배분율÷연인원수	

□ 2단계 : 1인당 배분금액 x 지급율

부문 점수	95점	90점 이상	85점 이상	80점 이상	75점 이상	70점 이상	70점 미만
지급비율(%) (1인당 배분금액 대비)	100	90	80	70	60	50	미지급

※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실시의 경우 보통 이하 등급에 해당할 경우 미지급함

※ 지급대상은 성과평가 해당연도 기준으로 근무기간 비율에 따라 지급(월미만 절사)

서 약 서

본인은 「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」 위촉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- 위험관리·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항상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하겠습니다.
-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위험관리· 성과평가 심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- 업무상 알게 된 정보 및 기타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.
- 투자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투자기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·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하지 않겠습니다.
- 관리기관(농업정책보험금융원)이 발주하는 법률자문, 소송대리, 연구과제 등을 수행하지 않겠습니다.

0000년 00월 00일

소 속:

서 명:

(인/서명)

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귀하